제 39 호

# 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6년 06월 21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세대주 성명 | 성 명<br>생 년 월 일 | 주 소 | 지연 신고사항 |
|---|---|---|---|
| 배** | 배**<br>1969-01-16 |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487번안길 | 무단전출 |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제40조제2항).

( 담당자 : 구 성서 문의전화 : 032-560-3259 )

2016년 06월 14일

검단1동장 인